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의 제한적 허용〉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724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5.
3. 회 부 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금지의 예외로서 학교·청소년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보험 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현행	개정안
第732條(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15歲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の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 -----. ----- ----- ---- <u>경우와 학교·청소년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u>

☐ 현행법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되, 심신박약자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예외 없이 무효로 보고 있음(제732조).

-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는 제732조의 취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고, 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 개정안은 학교·청소년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 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¹⁾으로써 유가족이 보험의 혜택과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1)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허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단체보험의 예시로 시민안전보험을 들고 있음.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가입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됨(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은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bscrbSttus.html?menuSeq=842> 참고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지는 15세 미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는 제732조의 입법취지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찬성하는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 제732조의 입법취지는 15세 미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적은 경우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유가족 보호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음.
- 단체보험은 구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²⁾이고, 단체의 구성원은 단체에서 탈퇴함으로써 당연히 피보험자의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적음.
- 제732조의 개정언해를 살펴보면, 1991년 ‘18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으로 연령을 낮춘 바 있고, 2014년 심신박약자의 경우 단체보험

2)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험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42884 판결).

가입을 허용하는 등 시대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732조의 적용범위를
개정한 바 있음.

○ 개정안에 반대하는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 15세 미만자는 일반적으로 부양능력이 없으므로³⁾ 유족의 생계보장
이라는 생명보험의 기능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음.
- 단체보험의 경우라도 보험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나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제732조의 예외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제732조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개정 당시 제732조를
삭제하려는 개정안⁴⁾과 학교·청소년 단체 등의 단체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사망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려는 개정안⁵⁾이 존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두 개정안의 내용은 모두 폐기되고, 의사능력 있는 심신박약자와
관련된 내용이 대안으로 통과된 바 있음.

3)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64조*).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
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0485호)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1421호)

: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수련·여행 등의 단체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 허용

문 의 처

02)6788-5055